

<p>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2조의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·시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·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4조(종전의 제12조) 중 제3항을 삭제한다.</p> <p>제16조(종전의 제14조)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</p> <p>제18조(종전의 제16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은 각각 이를 삭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① 다음 연도에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·국·본부장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소속행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"시"라 한다)가 실시하는 시정여론조사의 주제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여론조사의 대외신뢰도 향상 및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</p>	<p>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"시정여론조사"라 함은 시의 각종 시책의 수립,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상의 여론조사 기법을 이용하여 일반市民 및 공무원 등의 의견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. "통상의 여론조사기법"이라 함은 공중의 의견을 파악함에 있어 정확성·과학성이 여론조사 전문가 등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본추출·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방법 등을 총칭한다. "조사설계"라 함은 통상의 여론조사기법에 의한 표본의 추출, 조사방법, 설문내용, 분석방법 등 여론조사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계획을 말한다. "주제"라 함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중심내용을 말한다. <p>제3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,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 기타 위원장이 시정여론조사의 주제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안건 <p>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보관 조사방법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론조사 또는 도시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보관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<p>제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의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제3조제1호에 의한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초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</p>
--	--

<p>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·개최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 7 조(시정여론조사주제소위원회) ①시정여론조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여론조사주제소위원회(이하 "주제소위"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정여론조사 주제의 발굴·조정(세분·통합, 조사시기 등)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. 시정여론조사 주제의 적합·타당성 3. 시정여론조사 결과의 시책반영에 관한 사항 4. 시정여론조사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시가 직접 시행 나. 시가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다. 시가 민간 전문조사기관 등과 합동으로 시행 <p>②주제소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종합·조정하여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6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주제소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제4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④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공보관으로 한다.</p> <p>⑤회의는 매년 말 또는 연초에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·개최하되, 정기회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여론조사심의회에 제출할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을 사전에 심의한다.</p> <p>제 8 조(시정여론조사방법소위원회) ①주제소위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 또는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주제소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위원장이 승인한 주제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여론조사방법소위원회(이하 "조사방법소위"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정여론조사설계의 적합·타당성에 관한 사항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시정여론조사 결과분석의 적합·타당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. 시정모니터 등 타 조사방법과의 상호 보완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. 기타 시정여론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<p>②조사방법소위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조사방법소위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회의는 제5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매분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, 조사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 9 조(심의절차) ①다음 연도에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·국·본부장 및 시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시정여론조사에 대하여 주제소위에 상정·심의하고, 그 결과 시정여론조사의 주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방법소위에 상정, 심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제소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방법소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문 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.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<p>제 10 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 11 조(운영규정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
---	---
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128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1998. 12 기획경제위원회</td>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1월 11일, 서울특별시장</p> <p>나. 회부일자 1998년 11월 16일</p> <p>다. 상정일자 제16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(1998년 12월 18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 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 예산실장 탁병오)</p> <p>가. 제안이유 노인종합복지관 5개소 신설에 따른 설치 및 위탁근거 마련하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□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근거 마련 (안 별표1·별표2)</p> <p>(1)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※ 소재 : 중랑구 면목동 178-8 외 1 규모 : 대지 1,493㎡ 건물 2,371㎡</p> <p>(2)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※ 소재 : 성북구 종암동 66-25 외 4 규모 : 대지 1,088㎡ 건물 2,595㎡</p> <p>(3)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※ 소재 :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 외 8 규모 : 대지 12,099㎡ 건물 2,636㎡</p> <p>(4)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※ 소재 : 강서구 등촌동 661-4, 규모 : 대지 1,142㎡ 건물 2,532㎡</p> <p>(5) 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※ 소재 : 마포구 창천동 140, 규모 : 대지 1,286㎡ 건물 2,530㎡</p> <p>다. 참고사항</p> <p>□ 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※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 ①~②(생략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</p> <p>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④(생략)</p> <p>□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</p> <p>○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별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던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단일 조례로 통합 규정 일원화하여 '98.7.1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</p> <p>○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토지취득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건립하고 있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5개소(중랑, 성북, 은평, 강서, 마포)를 본 조례 제3조(명칭 및 위치) 및 제4조(운영의 위탁)의 규정에 의한 별표 1(서울특별시립공공시설), 별표 2(위탁사무)에 공공시설로 추가하여 위탁사무 근거를 마련하고, 아울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직제규칙 개정('98.8.12)에 따라 공공시설과 위탁사무의 주관국(과)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4. 질의·답변 : 생략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○ 원안가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8명 전원일치)</p> <p>6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의안번호	128	1998. 12 기획경제위원회	
의안번호	128			
1998. 12 기획경제위원회				